
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전용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73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1.

발 의 자 : 전용기 · 윤종균 · 이용선
박 정 · 이연희 · 송옥주
남인순 · 허 영 · 한민수
전진숙 · 민병덕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교정시설에 처음 수용되는 사람은 법원 · 검찰청 · 경찰관
서 등으로부터 발부된 집행지휘서, 재판서 및 수용에 필요한 서류를
면밀히 조사한 후 수용하도록 규정되어있음.

그러나 최근 12·3 내란 관련 재판 중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
받은 자가 심문 절차에서도 재판부를 모욕하는 등 법정 질서를 심각
하게 훼손하였음에도 인적사항 누락으로 인해 감치 집행이 불가능하
여 4시간 만에 집행정지되어 풀려나는 사태가 발생함. 이는 법원의 법
정 질서 유지를 위한 수단이 무력화된 것이나 다를 바 없음.

이에 「법원조직법」 제61조제1항에 따른 감치 명령에 의하여 수용
되는 신입자에 대해서는 신원 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
관한 조사를 생략하고 우선 수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치 제도의

실효성을 확보하고 엄정한 법정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(안 제16조제1항).
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법원조직법」 제61조제1항에 따른 감치에 의하여 수용되는
신입자에 대하여는 신원의 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
하여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감치 신입자에 관한 적용례)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
시행 이후 「법원조직법」 제61조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해지는 신
입자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6조(신입자의 수용 등) ① 소장은 법원·검찰청·경찰관서등으로부터 처음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(이하 “신입자”라 한다)에 대하여는 집행지휘서, 재판서, 그 밖에 수용에 필요한 서류를 조사한 후 수용한다. < <u>단서 신설</u> >	제16조(신입자의 수용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 다만, 「법원조직법」 제61조제1항에 따른 감치 <u>에 의하여 수용되는 신입자에</u> <u>대하여는 신원의 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</u> <u>여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.</u>
②・③ (생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